

메디시티 대구, 2020 의료창업 활성화 사업

- 2020년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 모집 추가 공고 -

대구광역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의 의료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해 의료산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0년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및 기 창업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구시 5대 주력산업 중에 하나인 의료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연계하여 의료산업 활성화
- 스타트업 육성기관과 의료산업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의료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내용

- 의료분야 스타트업 창업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연계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계서비스 제공 등

2. 지원 개요

□ 의료분야 스타트업 창업지원

- 지원분야 : 의료분야(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등)
 - (의료) 수요자 맞춤형 의료기기, 의학용품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아이템
 - (바이오) 신약 및 제약(의약품, 의약외품) 등 새로운 물질 개발
 - (헬스케어) 건강유지와 건강관리에 관여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0.11.30.
- 지원대상 : 의료분야 창업을 원하는 대구지역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및 기 창업 스타트업 (※신청 제외 대상은 '붙임1' 참조)

대 상	내 용
청년 예비창업자	- 대표 및 구성원이 청년*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자 - 2020년 7월 16일 까지 대구광역시에 중소기업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팀)
창업기업	- 사업장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업력 7년 이하의 기업 ('13.01.01일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함) - 2020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청년*을 채용 했거나 2020년 7월 16일 까지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 청년 : 2020년 1월 1일 기준 만18세 ~ 만39세

- 선 정 : 창업팀 0팀 0명 내외
 - 선정평가 : 서류·발표평가(70점 이상 통과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 내 용 : 사업화자금 지원(청년당 1천2백만원), 교육 지원, 멘토링, 투자연계 지원, 침복단지 연계서비스 제공 등

※ 사업화 자금 : 팀당 최대 4천8백만원 한도 내 지원가능하며 「인건비」로 지원 불가함.
사업비 잔액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화 자금(청년 인원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사업화자금 지원 :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시험분석 및 인증, 특허 등), 양산화(컨설팅, 디자인, 생산·품질관리 등), 성장지원(마케팅, 홍보, 전시회 지원 등)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 교육지원 : 창업자 대상교육(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실무자 대상 교육(e나라도움 교육, 세무회계 등)
- 멘토링 : 혁신센터 2층 원스톱서비스존을 통한 특허·법률 상담, 2층 K-ICT멘토링센터를 통해 기술·경영 멘토링 제공, 멘토스(멘토-멘티 매칭)DAY를 통한 혁신센터 전문멘토단 및 침복재단 연계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데이 운영
- 투자연계 지원 : 혁신센터-침복재단 추천 의료분야 스타트업 대상 IR 포럼을 통한 투자자연계 지원
- 침복단지 연계서비스 : 대구경북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신약개발 지원센터, 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연계 서비스 활용 지원

구 분	연계 지원 내용	협력센터/기관
시험·분석지원	· 비임상 단계의 장비사용료 ·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료	신약개발지원센터 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인허가 및 기술개발 컨설팅	· 식약처(청) 인허가 컨설팅 · 제품개발 및 성능개선 기술컨설팅 지원	식약처지원단 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지원 · (전)임상용 신약후보물질 제작지원	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의약생산센터
R&D 추가 지원	· 타 지원기관 과제 등으로 추가 R&D 연계	지역 내 유관기관

3. 선정 절차 및 기준

<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



평가 기준

- 선정평가 : 70점 이상 통과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 단, 선정된 기업 중 포기시 차상위 우수기업으로 추가 선정
- 평가기준 : [붙임2] 평가기준에 따름
- 평가방법
 - 평가기준표에 맞추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위원 전원의 고용창출역량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text{평가위원 평점} = \frac{\text{평가점수 합계}}{\text{평가위원수}}$$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6. 30.(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jwoon@ccei.kr)
- 제출서류(별지 서식 참조)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사업 지원서 및 사업 계획서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별지 1	
	신청자격 확인서	별지 2	
	청년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 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 청년(대표, 팀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대구) 확인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말소사항포함)	
		주민등록등본 - 청년(사업 참여 청년인력 전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대구) 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용)	
		4대보험 가입자 명부(사업 신청일 기준) - 2020.1.1.~ 현재 채용된 청년인력 확인	
해당시	기타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권 포함)		
제출처	상기 위 제출 서류를 PDF파일로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전자파일은 메일송부(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cjwoon@ccei.kr)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서류 제출(PDF 1개의 파일로 제출)

2) 서류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3)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신청자(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4) 최종선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추진일정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 일자(안)
공고 및 모집	주관기관(대구센터) 홈페이지 등	6.16.~6.30.
사업신청서·계획서등 제출	이메일 접수(cjwoon@ccei.kr)	
사전 서류검토	제출 서류 및 지원 대상 여부 등 확인	7.1.~7.3.
발표평가 자료제출	이메일 접수(cjwoon@ccei.kr)	
선정평가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서류 및 발표평가)	7.7.
최종결과통보	주관기관(대구센터) → 신청 기업(자)	7.9.
협약체결 안내	별도 안내	7.10.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신청 기업(자) → 주관기관(대구센터)	7.13.~7.15.
협약체결	개별 진행	7.16.~7.17.
사업수행	필요시, 수시점검	7~11월 중
협약 종료 및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11월 말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사업공고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문 참고
※ 프로그램 참여제외 대상 및 세부내용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할 것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의 실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향후 선정 공지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 천지운 매니저
(053-759-8141 / cjwoon@ccei.kr)

붙임1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

1.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사업
 - 공고된 사업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지원제외 대상사업으로 처리
2.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수혜기업(자)가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신용정보조회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 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4. 2020년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 선정되기 전 세부 사업별 중복접수는 가능하나, 사업 간 선호 순위를 밝혀야 하며, 최종참여는 1개 사업만 가능함
 - 사업종료 이후 감사 절차 과정에서 중복 사실 확인 시 환수 조치할 수 있음
5.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6.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No	대상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8. 기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붙임2 사업화자금 지원 분야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붙임3 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	점수
사업을 위한 준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 사업화자금 집행계획 	25
사업아이템의 사업성 및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 소개 - 창업아이템의 수익모델(BM) -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25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매력도, 규모, 확장성 - 제품화 및 판로개척 	25
고용창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고용계획 	25
합 계		100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